

우송대학교 ESG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23. 02.

제1조(명칭) 이 기구는 “우송대학교 ESG센터”라 칭하고 우송대학교 내에 둔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“본교”라 한다) ESG센터(이하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본 센터는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협치(Governance)의 교육경영 가치의 도입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창출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 업무 등을 관장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, 대학혁신본부의 업무를 지원한다.

1. 본 대학의 ESG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
2. 본 대학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지원
3. 친환경 에너지 캠퍼스 조성을 위한 협력 지원
4. ESG 기반 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
5. 지역사회와 연계 및 봉사 기관 선정 및 운영 지원
6. 사회봉사 교과목, 봉사활동 지도, 교육 및 평가 및 실적관리 지원
7. 평생교육원, 지역상생협력센터, 사회봉사단, 인권센터 등 대학내 관련 조직과의 협업 및 지원
8. 기타 대학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지원

제4조(구성) ①센터에는 센터장, 부센터장, 연구원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센터장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센터를 대표하여 운영을 총괄한다.

③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해 교직원 및 학생으로 구성된 위원회 및 자치기구를 둘 수 있다.

제5조(ESG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대학혁신본부장과 센터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대학혁신본부장, 부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.

③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ESG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ESG 정책 수립 및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
2. ESG 기반 지역사회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대학의 ESG활동에 관한 사항

제7조(운영) 센터장은 본 센터의 주요사항에 대해 대학혁신본부장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